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9.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9498	정희용의원	2025.03.31.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6.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8.25.) 상정, 축조심사
	2210046	이만희의원	2025.04.23.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6.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8.25.) 상정, 축조심사
	2210081	이만희의원	2025.04.24.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6.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

				사소위원회 회부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8.25.) 상정, 축조심사
	2214130	김선교의원	2025.11.11.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12.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8.25.) 상정, 축조심사
	2214756	임호선의원	2025.12.0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6.1.16.)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8.25.) 상정, 축조심사

나.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08.25.)에서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2.)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검역 의무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을 명시하고, 국가·지자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자발적 신고를 유인하는 등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검역 의무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을 명시함(안 제5조제6항제3호의3 신설).

나. 국가 및 지자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8항).

다.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신설함(안 제30조의2 신설 등).

라.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법률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

제9조제8항 중 “제6항의 사업 수행”을 “방역본부의 운영 및 제6항의 사업 수행”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동물검역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에 동물검역사(이하 “검역사”라 한다)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제5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동물검역에 관한 업무(제31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검역사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하는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9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전액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 중 “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를 “검역관, 가축방역사 및 검역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 ⑤ (생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3의2. (생 략) <신 설> 4. ~ 8. (생 략)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 4. ~ 8.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⑦ (생 략)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방역본부의 운영 및 제6항의 사업 수행----------.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동물검역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에 동물검역사(이하 “검역사”라 한다)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제5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동물검역에 관한 업무(제31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검역사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후단 삭제>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하는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9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전액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한다.	⑦ 제6항----------.
⑦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검역관, 가축방역사 및 검역사----------.